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미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금융회사등 제출용)

①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보유연도

4	ō.	<u>l</u> 적 사 항				보유금액						
일련 번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성 명	⑦ 계좌번호	8 계좌구분	9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	⑩ 국내/국외	(f) 통화코드	① 증권표준코드	<sup>®</sup> 상품(종목)명	<sup>⑭</sup> 보유수량	<sup>15)</sup> 취득가액	⑥ 보유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대표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금융회사등이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납세자별 보유내역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1. ① 금융회사등 및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와 금융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③ 보유연도란: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제출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 3. ④ 일련번호란: 계좌보유자 및 계좌번호별, 보유한 금융투자상품별 순서대로 번호를 적습니다.
- 4.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5. ⑦ 계좌번호란: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6. ⑧ 계좌구분란: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구분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특례	적용 계좌			
구분	일반계좌		분리	l과세		개인종합자산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투융자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기타	관리계좌(ISA)
코드	А	В	С	D	Е	F	G	I	J

7. ⑨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구분에 따라 아래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주식등(10)							채권등(20)						집합투자기구(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구분		상장		Н	l상장		ᄀ	지	특	호	외	71	투자 계약	공모 국내주식형	_	Е	Е	D	Е	고드	실버	71	М	М	_	콜	풋	С	71
14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거	래	그 외	채	방	수	사	국	기 증권 타 (30)	작년 작년 작년 학생	외	L	L	L	T	ョニ 뱅킹	열미 뱅킹	타	물	도	스 왑	옵 셔	옵 셔	F	기 타	
	1:1			중소 · 중견기업	그 외			^11	^11	^11	^11		(00)	투자기구		W	0	3	IN							겐	견	D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8. ⑩ 국내/국외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른 국외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	국외
코드	1	9

- 9. ⑪ 통화코드란: 국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예 USD. CNY 등)
- 10. ⑫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거나 공란으로 둡니다.
  - ※ 국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11. ⑬ 상품(종목)명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 또는 종목명을 적습니다.
- 12. ⑭ 보유수량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 13. ⑯ 취득가액란: 계좌별, 금융투자상품별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 14. ⑯ 보유가액란: 계좌별, 금융투자상품별로 1.1.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현재가액을 적으며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란 1.1. 이전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의 최종시세가액을 말합니다. 현재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국외금융투상품의 경우 보유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 분	보유가액
주식등	1) 상장주식등 및 K-OTC 시장 거래 비상장주식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주식 수
THO	2) 1) 이외의 주식등	1.1.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액면가액
채권등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채권 수
세 선 등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등	1.1.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파생결합증권등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파생결합증권 수
파일들 팀으 단으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등	1.1. 현재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한 공정가액 × 파생결합증권 수
상기 외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타 금융투자상품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금융투자상품 수
기타 금융투자상품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 금융투자상품	취득가액